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9. 5 선고 2023나116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9. 5 선고 2023나11601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7. 5 선고 2021가합15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곧음

담당변호사 김완수

변론 종결2024. 7. 4.

판결 선고2024. 9. 5.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7. 5. 선고 2021가합1532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21. 6. 30.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1. 7. 1. 접수 제1190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0행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4행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C이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18행부터 5쪽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5, 7, 8, 9, 16 내지 19,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3차례에 걸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제 담보가치 473,500,000원¹⁾ 과 이 사건 각 건물에 설정한 각 전세권의 전세금 합계 550,000,000원을 합한 1,023,500,000원인 반면, 원고가 2020. 4. 29.부터 2021. 4. 15.까지 C에게 대여한 돈의 합계 1,094,162,1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1. 6. 30.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친 대여원리금은 2024. 5. 9.자 준비서면 1, 2쪽 표(이하 '원고 작성 채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1,334,240,129원(= 원금 1,094,162,178원 + 이자 240,077,951원)이므로, 위 근저당권 등을 통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310,740,129원(= 1,334,240,129원 - 1,023,500,000원)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원고 작성 채권표의 계산이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원고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는 피보전채권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작성 채권표에는 2020. 5. 14. C에게 190,476,712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대여원금 2억 원에서 초과이자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하나(2024. 3. 29.자 준비서면 각주 6 참조), 관련 금액은 2020. 5. 14. 및 5. 15. C 명의 계좌에 나누어 입금되어 그 일자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갑 제5호증 3쪽 참조), 이와 관련된 차용증인 갑 제17호증에는 대여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부동문자로 '2억 원'이라고 기재된 옆에, 수기로 '3억 원'이 숫자 및 문자로 병기되어 있고 C의 도장도 각 날인되어 있다).

② 원고 작성 채권표에는 2020. 5. 19. C에게 47,958,027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금액은 2020. 5. 20. C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그 일자에 차이가 있다(갑 제5호증 4쪽 참조).

③ 원고 작성 채권표에는 2020. 6. 23. C에게 174,577,095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금액 중 일부는 2020. 6. 24. C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그 일자에 차이가 있고(갑 제5호증 7쪽 참조), 이에 관한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대여가 있었는지 여부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④ 원고 작성 채권표에는 2020. 8. 5. C에게 116,264,493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금액은 2020. 8. 5.부터 2020. 8. 14.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C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그 일자에 차이가 있다.

⑤ 원고 작성 채권표에는 C에게 2020. 8. 18. 1,500만 원, 2020. 8. 20. 4,000만 원, 2020. 9. 28. C에게 8,000만 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대여가 있었는지 여부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용일과 변제일이 모두 2020. 10. 28., 차용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갑 제8호증 3쪽의 차용증이 위 대여금들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2024. 5. 9.자 준비서면 각주 1), 기재된 작성일자, 변제기, 차용금액이 실제 거래내역과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 작성 채권표에는 2020. 10. 14. C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차용증(갑 제8호증 2쪽, 갑 제9호증)에는 대여금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 작성 채권표에는 2020. 10. 16. 2,900만 원, 2020. 10. 21. 1,000만 원을 각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대여가 있었는지 여부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⑧ 원고 작성 채권표에는 2020. 12. 30.부터 2021. 4. 15.까지 사이에 C에게 합계 3,7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2)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대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⑨ 더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의 계좌를 관리한 바 있다는 것인데,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내역들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특히, 원고는 C 명의 계좌에서 2020. 7. 17. 원고에게 송금된 3,64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측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의 일부를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나(2024. 5. 9.자 준비서면 3쪽 참조), 원고가 피고측에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을뿐더러, 위 돈이 C 명의 계좌에서 송금되었음에도 피고의 변제금이라는 원고의 설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C이 무자력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당시 C의 적극재산은 1,821,216,250원[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가액 1,753,000,000원(갑 제24호증)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F 부동산의 가액 68,216,250원(을 제2호증)]인 반면, 소극재산은 1,945,345,019원[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 1,334,240,129원 +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 600,000,000원 + 갑 제20호증으로 확인되는 조세채무 11,104,89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24,128,769원 초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1,334,240,129원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6억 원이 아닌 528,283,474원이라는 점(2023. 3. 13.자 준비서면 2쪽)에서 C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8,854만 원 정도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바(2024. 5. 9.자 준비서면 6쪽),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C의 소극재산은 1,433,885,019원(= 1,334,240,129원 + 8,854만 원 + 11,104,890원)에 불과하여 적극재산 1,821,216,25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C이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5쪽 16행의 "다)"를 "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2행 "약정일 뿐, 이로써"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일 뿐이어서 위 약정의 당사자도 아닌"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원철

판사김경선

판사기희광

별지

1)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 960,000,000원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에 근접한 2021. 8. 16. 기준으로 평가된 이 사건 토지의 가치 473,500,000원(을 제2호증 11쪽 참조) 중 소액

2) 갑 제8호증 5쪽 1,064,800원에 대한 차용증 및 6쪽 3,60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 및 지불각서는, 그 기재 금액, 작성 일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